

204

382

제 세	국 가	의 약 과	전화번호	근거서류접수일자
가 호 계 담 합	기 안 처	가 아 리	214	
가 호 계 담 합	의 안 과 장	보건 사 장	부 시 장	시 장
관 서	시 무 과	의 안 과 장	부 시 장	시 장
기 년 일	1962. 7. 12	년 월 일	1962. 7. 21.	1962. 7. 21
분 기	류 호	진 체 통 제	종 결	상
경 수 참	유 선 조		발 신	
제 목	가호원 조산원 라격시험실시			
<p>1962년도 가호원 조산원 라격시험을 국민의료법 개정법률 부칙 (2)의 추경에 의하여 서울 특별시 시행 제 4회 조산원 제 8회 가호원 자격시 험을 실시기로 하리 별항과 같이 실시요령을 정하고 시험 일자를 공고 하는동시 심의위원회 위원 및 시험 위원을 위촉 하며 소요경비를 지출코자 결재를 바랍니다.</p>				

조산원  
사  
장  
의  
인  
도  
인  
도  
인  
도

480-26

서울특별시

96

國民醫療法改正法律 施行令

第十一章 第七條 二項

助産員 看護員 資格試驗 規程에 依하여  
一科目以上 合格한 者는 本法 施行日 起  
부터 二年間 從前 規定에 依하여 當  
該 試驗에 應試 할 수 있는 合格한  
者는 本法 第二章의 節次를 거쳐 二 免許  
를 받을 수 있다.

1. 실기 요령

가. 수험 자격

1. 간호원

간호원으로서 보건 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 
실험실과 시설이 있는 병원에서 3년 이상 관하여  
2년 이상 실기수련을 받은 자 (전년도 과목 합격자에 한함)

2. 간호원

중학교를 졸업 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 
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 
보건 사회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 시설에서 간호에  
관하여 3년 이상 실기수련을 받은 자 (전년도 과목합  
격자에 한함)

나. 시험 장소 비경

다. 원서 접수 장소

서울특별시 보건사회국 의약과

라. 접수 마감

공고 일자로부터 8월 18일까지

서울특별시 7-3

306

다. 수험포교부일정 및 장소 (시험장소)

나기 1962년 8월 20일 오전 9시

바. 시험시행일

로산원

일	과목별 자	과 목 별 수 험 시 간		
		9.00 ~ 10.30	10.30 ~ 12.00	1.00 ~ 2.30
8월 20일	산 과 학	로생아학	영 양 학	↗
8월 21일	로 산 학	산과항공 보건간호	로 간 원 리	

간호원

일	과목별 자	과 목 별 수 험 시 간		
		9.00 ~ 10.30	10.30 ~ 12.00	1.00 ~ 2.30
8월 20일	생 리 학 및 해 부 학	세 균 학 및 스 투 법	위 생 학	영 양 학 및 식 의 료
8월 21일	약 물 학 및 미 의 학	일 반 간호학	간 호 원 리	리 학 교 법

비 고 (1) 로산원, 간호원 실습 시험은 학과시

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함

(2) 수험자는 필기 용구를 지참하고 수

험 당일 상오 8.00시 까지 수험장소

로 집합하여 지시를 받을 것

자. 수험원서 구비서류 (수입증리 200원 별첨)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(1) 수험원서 (별지 1호 양식)                  | 1통 |
| (2) 이력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통 |
| (3) 당해 시설의 장이 발행한 실지수련증명서 (별지 2호 양식) | 1통 |
| (4) 건강진단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통 |
| (5) 구청장 또는 시.읍.면장 발행 신분증명서           | 1통 |
| (6) 호적 초본 또는 호적등본                    | 1통 |
| (7) 사진 (명암판 반형)                      | 3매 |
| (8) 조산원 수험자는 간호원 면허증사본<br>(각 2원본 제시) |    |

아. 합격자 발표 (1차 발표)

서기 1962년 9월 15일 예경

자. 실습시험

서기 1962년 9월 18일

차. 합격자 발표

서가 1962년 9월 22일

10-1

2. 공고안

서울특별시공고 제 644호

서기 1962년도 조산원 간호원 자격시험  
을 별지 요령에 의하여 시행한다

서기 1962년 7월 23일

서울특별시장 유 태 일

(실시요령 이기할것)